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65

발의연월일: 2024. 11. 29.

발 의 자:정희용·박성민·김성원

김형동 • 박덕흠 • 김태호

김예지 • 백종헌 • 서천호

정점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중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국가적 차원의 합당한 예우를 표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력에 따라 별도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금액은 매월 32만원으로 미미하여 참전유공자들이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거주지역에 따라 월 1만원에서최대 20만원까지 달리 지급하고 있어 참전유공자 간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음.

본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생활 안정과 수당 지급의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나 구체적인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각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급액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혜택이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등).

법률 제 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중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생활안 정과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제7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외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급액은 제7항에 따른 지급액의 100분의 50이 되 어야 한다.
- ⑨ 참전명예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전명예수당 지급의 특례) 제6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

고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은 이 법 시행 후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지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 ⑥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 ⑥
(생 략)	(현행과 같음)
⑦ 참전명예수당은 월액(月額)	⑦
으로 지급하며, 그 <u>지급액 등은</u>	<u>지급액은 「국민</u>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정한
	<u>다</u> .
<u><신 설></u>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을 위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
	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외의 수
	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급액은 제7항에
	<u> 따른 지급액의 100분의 50이</u>
	되어야 한다.
<u><신 설></u>	⑨ 참전명예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
	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u>으로 정한다.</u>